

#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전자기록의 심사에 관한 연구

최종수\* · 최영곤\*\*

## A Study on the Nature of eUCP Credit and the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

Choi, jong-su\* · Choi, young-kon\*\*

### 〈목 차〉

I. 서론	IV. 전자기록의 심사에 대한 내용
II. 전자무역과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거래원칙	V.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III. 전자신용장의 전자기록	Summary

## I. 서론

국제무역관련 산업기술의 발달과 변화가 끊임없이 진전되고 또한 Internet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전자무역거래가 발달이 가속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종이서류 위주의 화환신용장규칙(UCP 500)은 이미 그 적합성을 상실해가는 상황이다.

2000년 봄 파리에서 개최된 ICC의 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는 작업반을 조직하여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와 관련된 입지를 명확히 밝히려는 목적으로 UCP 500에 대한 추록(supplement)을 제정하였다.<sup>1)</sup> 2001년 11월 동 위원회는 이 UCP 500의 추록(eUCP)을 승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2년 4월 1일을 기해 발효되었다.<sup>2)</sup>

뿐만 아니라 2001년 UNCITRAL이 전자서류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에 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자서명에 대한 UNCITRAL모델법을 제정·공포하여 전자적 제시를 가능케 하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강사(한국경영지도연구원/연구원)

1) ICC, Export ponder e-supplement to documentary credit rules, [www.iccwbo.org/home/news-archives/2000/e-supplement.asp](http://www.iccwbo.org/home/news-archives/2000/e-supplement.asp)

2) ICC, The secretary General, Memorandum re: updating UCP 500, 24 July, 2001.p.1

화환신용장의 통일관습 및 관행에 대한 세부적인 eUCP는 기존의 UCP의 개정이 아니고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적용되고 또한 eUCP는 전자신용장거래에서 기존의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전자서류)를 위한 필요한 규정들을 기술발달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Version 1.0을 제시하였다. eUCP의 제정으로 기존의 신용장거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무역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UCP의 발효에 따라 전자무역·전자신용장의 개념, 거래원칙을 검토하여 전자적 기록의 요건 및 전자기록의 본질 및 심사에 대한 내용을 규명하고 분석·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II. 전자무역과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거래원칙

### 1. 전자무역의 의의

#### 1) 전자무역의 개념

국내에서 1991년 '무역자동화 업무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그 동안 체계적으로 무역자동화를 추진하여 왔었다. 이러한 무역자동화는 무역관련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전달하는 등 무역절차를 효율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무역방식이라기 보다는 기존 무역방식의 효율적인 수행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이 후부터 인터넷사용의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았던 국제무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주었다. 즉, 무역거래 성사 이전의 각종 마케팅활동, 거래조건 협상, 대금결제뿐만 아니라 무역거래 성사 이후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무역EDI<sup>3)</sup>의 활용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무역에 대한 새로운 무역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자무역(e-trade)이란 무역의 모든 절차를 인터넷, EDI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무역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sup>4)</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 된 표준에 따라 전자 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것이다.

4) 이성봉의 2인, 「전자무역의 최근동향과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p20

전자무역을 기존무역과 비교하여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무역경로, 거래지역, 거래시간, 마케팅활동, 의사교환, 무역서류작업, 대금결제 및 물류 등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경로의 경우 기존무역은 무역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자무역에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익숙한 새로운 무역에이젠트가 개입하거나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소비자가 바로 거래하는 형태가 많아졌다.

거래대상지역도 과거 한 기업이 상대할 수 있는 지역이 인력 및 정보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전자무역 방식에서는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전세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거래 시간도 24시간 가능함으로 기존의 무역은 영업시간이 하나의 큰 제약이다.

국제간의 거래처발굴과 거래처의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 거래협의를 위한 의사교환 등의 마케팅활동에 있어서도 전자무역은 기존 무역방식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고객의 요구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호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이 가능하다.

## 2) 전자무역의 특징

전자무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거대한 단일시장으로서 새로운 기회제공

이제까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시장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인프라에 의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또한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 마련된 시장에서 누구나 값싼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란 시장에서는 초우량 대기업이나 초대형 다국적 기업에 못지않게 일반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중소기업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 (2) 교역상품과 서비스가격의 단일화 및 하락

인터넷에서는 전문정보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특정 상품을 어떤 나라의 어느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특정 상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소비자들 간에는 철저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거래가 이루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이라는 거대시장을 통해서 가격구조가 평준화되고 반면 제품차별화가 확고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유통비용이 하락으로 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3)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전세계를 상대로 문자와 그림은 물론, 음성과 동영상 등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사나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존의 무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다.

(4) 거래처 발굴의 효율화 및 손쉬운 거래 정보의 획득

기존에서는 거래처의 발굴을 위해서는 거래 알선 기관에 찾아가 정보를 얻거나 각국에서 발행하는 무역업체 총람, 제조업체 총람, 기업연감 등의 디렉토리를 찾아보거나, 해외로 배포되는 인쇄 매체나 현지의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왔거나 혹은 무역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또는 국제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거래처를 발굴하여 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무역유관기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올려놓은 무역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정보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인터넷을 통한 거래알선 무역매매는 기존 무역방식을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비용절감 항목은 기존의 무역방식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 직접 권유장을 작성하여 다수의 미지 거래처에게 우편, Fax을 통한 송부비용, 인건비, 샘플송부비용 및 샘플 자체비용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전자매체를 통한 거래알선을 이용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다.

## 2.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거래원칙

### 1) 전자신용장의 의의

무역의 패러다임이 점차 전자통신을 이용한 무역인 전자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전자무역이란 무역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무역전반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금결제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자신용장의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무역에서 필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신용장(Electronic Letter of Credit)이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신용장이 개설되어 통지되는 무서류신용장(paperless letter of credit)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전자신용장통일

규칙(e-UCP)에 준하여 정의하면, 전자신용장은 그 조건에서 “전자신용장통일 규칙에 준거한다고 명시하여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이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추론으로 적용되는 신용장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sup>6)</sup> 또한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신용장의 개념을 기초로 자세하게 정의하면 “전자신용장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행인이 이에 명시된 조건의 일치시에 전자환어음을 인수지급하거나 다른 지급요구에 응하겠다는 은행 또는 타인에 의한 전자적 약속을 의미한다. 전자신용장은 취소가능하거나 취소불능일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적인 약속은 전자환어음을 인수·지급한다는 합의이거나, 은행 또는 타인이 인수·지급하도록 수권된다는 진술일 수도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화환신용장은 전자신용장에 전자환어음과 전자선적서류가 첨부된 신용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신용장에는 신용장의 내용 모두를 전송하는 full cable방식과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short cable방식이 있다.

전자신용장과의 유사한 개념으로서 전신신용장이 있는데 전신신용장은 물품의 선적이 임박한 경우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내용을 전신으로 송부하고 통지은행은 별도의 신용장통지양식에 이 전보문을 첨부하여 통지은행의 책임자가 서명하여 수익자에게 전달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전자신용장은 전신신용장과는 달리 통지시에 별도의 신용장통지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 2) 전자 신용장하에서의 거래 원칙

### (1) 전자신용장의 독립성원칙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은 신용장거래와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 및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별개의 계약을 의미하며,<sup>7)</sup>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은 전자신용장의 거래에서도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 즉, 전자신용장하에서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전자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과 기타 계약과 별개의 거래이고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단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해 개설되면 신용장이 개설된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자신용장에서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거래당사자는 여기에 구속되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5) Peter Jones,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 - Bolero's Legal Platform" www.ewbcome.com

6) 장용훈·한재필, 전자신용장 통일규칙론, 두남출판사, 2002, p12

7) 오원석,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2002, p106

다.

기존의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입장에서 전자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무관하고 이에 구속되지도 않는데 이는 매매계약과의 독립성에 해당된다. 전자신용장거래<sup>8)</sup>는 개설의뢰인과 은행간의 신용장 개설계약과도 무관한 거래인데,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계약에 기초하여 개설 은행의 지급의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항변할 수 없고 신용장의 수익자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는데 이는 개설계약과의 독립·추상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2) 전자신용장의 추상성원칙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원칙이란 신용장거래의 대상을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타의 무의행이 아니라 수익자가 제시하는 선적서류라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원칙도 마찬가지로 전자신용장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신용장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전자서류를 거래하는 것이지 전자서류가 관계되는 물품, 서비스 및 기타 채무이행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원칙이 전자신용장에서 성립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실물거래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은행도 신용장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서류거래에 의한 원칙은 전자신용장에서는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원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sup>10)</sup>

전자신용장거래라고 하는 것이 신용장 자체의 업무가 모두 전자화되고 선적서류도 모두 전자서류에 의해 제시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선적서류도 모두 전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자신용장거래에서도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원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3) 전자신용장의 엄격일치원칙

신용장거래에서 엄격일치의 원칙이란 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모든 신용장에서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은 서류상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의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거래은행의 서류심사 의무에서 뿐만 아니라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 신용장 발행의뢰 또는 지시의 수행과 통지은행의 신용장 통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8) 이영수·김형국, 인터넷무역론, 두남출판사, 2002, pp. 176~177

9) 박상기·심갑영,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2002, pp.264~266

10) 최석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1호, 1999, pp.15~16

11) 박상기·심갑영, 전제서, p.256



원칙은 신용장 거래가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이므로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신용장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무역거래에서는 문서의 정확성이 배가 된다. 문서표준에 의해 생성된 전자문서의 경우는 새로 재입력하지 않고 수신된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내용 중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EDI소프트웨어에 의해 편집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배가되는 것이다.

전자신용장이 허용되는 메시지 제공방법으로서 EDI메시지를 명시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메시지의 형태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sup>12)</sup>

이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작업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UN과 ISO의 후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UN/EDIFACT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무역에서 정확한 서류가 제공된다면 그 서류는 유효하고 공식적인 서류 즉, 특정거래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형태임에 틀림없다. 인터넷 무역시스템에서는 표준으로 이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이서류보다는 표준화된 전자메시지를 통하여 쉽게 서류상의 오류와 사기성 서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무역에서 서류제공에 있어서 문제는 판례법에서 발생한다. 판례법은 서류가 신용장에서 규정된 기술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류를 심사할 때 은행은 모든 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는 EDI 메시지로 인한 문제로서 전자서류가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기술은 사전에 정의된 기술항목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자신용장에서 은행은 서류의 기술 항목이 전자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록 다른 항목에서 일치하는 충분한 추가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전자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류를 심사할 때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과정은 신용장에서 약정된 다른 서류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자신용장에서 그러한 심사에 대해 사용되는 방법은 합의된 메시지의 구조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물품의 기술이 운송서류나 보험증권, 상업송장에 있으면 이러한 항목의 내용을 대조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전자신용장의 초기에는 은행은 표준적인 종이거래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은행의 표준판례가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고 실무자가 전자신용장거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격일치의 원칙이 완화되어 적용되던 상당일치의 원칙은 전자신용장거래에서는 상용되어서는 안되며 서류심사에 있어서 은행의 재량권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

12) 최석범, 전계논문, p.17

다. 그리고 서류심사의 기준이 되던 국제표준은행관습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할 수 있다.

### 3) 전자신용장 도입의 장점

#### (1) 서류작성과 관련된 비효율성 제거<sup>13)</sup>

전자신용장의 도입과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 인하여 기존의 서류작성이 수작업에서 컴퓨터작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서류작성상 발생하는 오류가 줄어들고 수신된 정보를 재입력 과정없이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이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또한 줄일 수 있다.

#### (2) 무역서류의 전달 및 취급과 관련된 비효율성 제거

선적서류의 전자화와 함께 신용장을 전자데이터화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류송부와 수수 및 심사에 관련된 인적 시간적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인터넷 무역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용장의 도입으로 선하증권의 위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관행의 변화로 서류가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고 전자선하증권도 그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지 소재의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 조항의 파일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 선적서류의 전자데이터가 개설은행에 도착하였을 때 동 파일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점점, 신용장잔고의 관리가 가능하여 업무개선이 크게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불레로 서비스를 통한 무역서류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무역업무 처리 기간이 24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sup>14)</sup>고 설명하고 있다.

#### (3) 무역서류 처리비용의 저렴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무역서류 처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전자신용장의 도입과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 인하여 무역서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외환은행과 한비은행은 불레로 서비스를 통한 무역서류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무역서류 처리비용이 80%이상 절감되어 연간 평균 4,9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sup>15)</sup>고 설명하고 있다.

13) 이영수·김형국, 인터넷무역론, 두남출판사, 2002, pp.180~181

14) 내외경제신문, 무역서류 인터넷결제 한빛, 2002.5.10. (최석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1호 1999, pp.22~23 재인용)

15) 내외경제신문, 전제지 참조



### Ⅲ. 전자신용장의 전자기록

#### 1. 전자기록의 정의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이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창출(created)되고, 생성(generated)되고, 송부(sent)되고, 접수(received)되고 또는 저장(stored)되는 자료를 의미한다.<sup>16)</sup> 그리고 전자기록의 송부인의 명백한 정체와 그 전자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명백한 근원 또한 그 기록이 완전 및 불변의 상태로의 잔존가능성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신용장(eUCP credit)조건에의 일치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능해야 한다.

#### 2. 전자기록의 요건

전자기록의 요건에 대해서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에는 전자기록에 관련하여 형식(format), 통수(number) 및 서명(signature)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1) 형식

전자기록에서 형식이란 그 전자기록이 표시되거나 인용되는 자료조직을 의미한다.<sup>18)</sup> 형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plain text, PDF, tanfile, PostScrip, XML 등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계속 개발되어 나타나고 또한 대체되어 사라지기도 한다.<sup>19)</sup>

##### (1) 형식의 지정

전자신용장에서는 제시되어야 할 모든 전자기록의 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sup>20)</sup> 수취인의 e-Mail Program에서 접수되는 전자기록의 형식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전자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전자기록으로

16) eUCP Version 1.0, Article e3, B, i

17) eUCP Version 1.0, Article e3, B, ii

18) eUCP Version 1.0, Article e3, B, iii

19) Young, Margaret L. & others, Internet : The Complete Reference, Millennium Ed., McGraw-Hill, 1999, p.650

20) eUCP Version 1.0, Article e4

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그리고 선하증권(bill of lading)등이 있으며 이들은 보통 PDF형식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 (2) 형식의 무지정

전자신용장(eUCP credit)에서 전자기록의 형식(format)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 송부인(sender)은 그의 재량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도 전자기록의 제시가 가능하다.<sup>21)</sup> 이러한 경우 수취인(receiver)은 예기치 아니한 형식으로 접수되어 자신의 e-Mail program이 판독이 불가능하여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있어서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송부하여도 무방하여 수취인(지정은행, 발행은행, 확인은행 및 발행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자신용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형식이든 정하여 제시하도록 하여야 판독불능에서 오는 불편을 미연에 예방할 수 한다.

## 2) 원본과 사본의 통수

전자신용장이 1통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전자기록은 1통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다.<sup>22)</sup>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은 이를 필요한 통수만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을 준거하여 전자기록이 제시되는 경우 수통의 전자기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용장에서 수통의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거래에서 오랜 기간 관습화되어진 “full set of original bill of lading”의 표현을 그대로 전자신용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수익자는 1통의 전자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1통의 전송으로 접수자가 필요한 통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3) 전자서명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란 어느 한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전자기록에 대한 그 서명자의 인증사실을 명시하기 위하여 전자기록에

21) eUCP Version 1.0, Article e4

22) eUCP Version 1.0, Article e8. Originals and Copies

첨부 또는 논리적으로 결합하고 이행 또는 채택한 자료처리(data process)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3)</sup>

또한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에서는 “전자서명이란 자료메시지에 전자형태로 첨부되었거나 그 자료 메시지에 관련된 서명자를 인식하고 또한 그 자료 메시지(data message)에 포괄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명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전자서명은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중대사이다. 전자신용장거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류의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신용장 담당자나 서류의 심사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확인은 별문제가 아니었다. 종래의 신용장은 서신의 형식에 의하여 발행되어 오기 때문에 이의 발행담당자인 서명권자의 서명을 사전에 교환하여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신용장의 진정성 확인에는 별 불편이 없었다. 또한 선하증권,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 등의 운송을 증명하는 지면서류(paper documents)의 경우에도 발행인의 서명이 필요하여 서류로서의 구비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에 있어서 전자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개방통신회로망(open networks)의 특성으로 접속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는 Internet을 통한 e-Mail형식의 전자기록은 그 기록 자체뿐만 아니라 송부인 즉 서명자의 진정성확인이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명자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가 승인 또는 인증하는 정보자료를 인정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자서명은 이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별 무역회사, 선박회사의 운송인, 보험회사 등의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을 신용기관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기관<sup>25)</sup>이 등장하여 이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IV. 전자기록의 심사에 대한 내용

### 1. 전자기록 제시의 의의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제시(presentation)란 발행은행의 지급 등의 약속이행을

23) eUCP Version 1.0, Article e3, B, ii

24)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2001), Article 2 Definitions (a)

25) 인증기관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bolero.net등 있음

실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제시는 발행은행에 직접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발행은행의 거래은행인 지급·인수·매입은행 등의 지정은행(nominated bank)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일치하는 (compliant)서류를 제시하는 시점에서 발행은행에 대하여 지급 등의 약속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는 발행은행의 지급 등의 약속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며 선적품에 대한 물권증서를 포함하는 선화증권, 보험서류, 상업송장의 3가지가 대표적이다. 이 이외에도 수입업자의 필요에 따라 품질검사증(certificate of quality) 및 영사증(consular certificate)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신용장(eUCP credit)거래에서도 이와 같은 서류(documents)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다만, Internet을 통하여 e-Mail형식으로, 지면서류가 아닌 전자서류(electronic documents) 또는 종이 없는 서류(paperless documents)에 해당하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전자기록의 제시방식을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라고 한다.

## 2. 전자기록의 심사

전자신용장상 전자기록의 제시(presentation)에 대한 심사에 관련된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의 규정을 분석·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주요연구과제는 전자신용장의 조건에서 제시되는 전자기록의 심사기간(period of examination)의 결정, 전자신용장에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의 적용여부, 전자기록의 심사(examination) 그리고 거절통지(notice of refusal)의 심사 등이다.<sup>26)</sup>

### 1) 전자기록에 대한 심사기간의 결정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서 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완결통지를 접수하게 되면 제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7)</sup>

#### (1) 영업된 접수 다음 최초 영업일 기산원칙

제시된 서류의 심사는 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완결통지를 접수한 영업일 다음 최초 영업일”에 기산된다.<sup>28)</sup> 서류의 제시가 은행 휴무일에 접수 되었더라도 은행은 이를 유

26) 장홍훈·한재필, 전거서, pp77~79

27) eUCP Version 1.0, Article e5, c:

28) eUCP Version 1.0, Article e7, a, i :

효한 제시로 수리하지 않는다. 은행 휴무일에 접수된 것은 다음 최초의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사를 위한 기산일은 휴일 후 영업일 접수 다음에 오는 최초의 은행영업일이 된다.

## (2) 다음 최초 영업일 기산

만일 은행이 영업 중임에도 그 시스템이 완결통지를 접수하지 못하는 불능상태에 있다면 제시를 위한 전자신용장의 유효기간 종료일 또는 운송서류 발행 후 허용 제시 기간은 연장된다. 그러므로 서류의 심사를 위한 기간의 기산일(initial date in reckoning)은 은행의 시스템이 완결통지를 접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된 최초의 은행 영업일이 된다.<sup>29)</sup>

## 2) 심사 규칙의 적용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의 심사에서 서류의 심사자는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은 물론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전자신용장이라 한다. 이 전자신용장의 조건에 의하여 이행되는 전자기록제시에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은 물론,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전자기록제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의 차이점을 가진다.<sup>30)</sup>

첫째, “문면상 나타난다.”(appears on its face)라는 용어는 전자기록의 자료내용의 심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문면상이라는 말은 전자신용장 거래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appears on its face”는 “문면상 나타난다.”로 해석된다. 이 용어는 신용장의 조건에 제시된 서류의 조건이 일치하는 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면상이란 그 내용상의 조건이 아니고 문언의 표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엄밀일치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때에 일치성은 문명상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문명상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 동일한 것일지라도 수리되지 아니하는 관행이 준수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엄밀일치의 원칙은 근간에 상당일치의 원칙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일면을 보

29) eUCP Version 1.0, Article e7, a, ii :

30) eUCP Version 1.0, Article e7, a

이고 있다. 신용장조건에 문면상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신용장거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 아닌 타자상의 오류와 같은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sup>31)</sup>

둘째, “서류(documents)의 개념에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도 포함된다.” 서류의 개념에는 (1)지면서류와 (2)전자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에서는 전자적 제시와 관련하여 서류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규칙에서는 전자서류 또는 지면없는 서류(paperless document) 등의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전자기록이 사용하고 있음은 서류의 개념 범위에 전자기록을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특이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제시장소(place for presentation)는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소의 개념은 거리의 주소를 의미한다. 주소는 우편이나 기타 통신이 수신인에게 도달될 수 있는 장소의 개념이다. 전화 및 FAX기 연결되는 번호는 그것만으로 독립적 의미의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거리주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메일 주소는 거리의 주소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 자체로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적 제시에 있어서 이러한 전자주소를 필요로 한다.

넷째, “서명”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을 포함한다.” 서명(sign)이란 전통적인 개념에서 육필서명을 의미한다. 지면서류에는 인증의 목적으로 육필서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신용장거래에서 사진 복사, 자동장치 또는 컴퓨터에 의한 서류가 생성되면서 다양한 서명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육필서명 이외에도 인증기계 및 전자방식이 실용화 되었으며 전자서명은 전자기록의 인증을 위하여 나타난 Internet 시대의 산물이다.

다섯째, “추기”(superimposed), “부기”(notation) 또는 “스탬프”(stamped)란 전자기록에서 추가적인 성격을 지니는 자료내용(data content)을 의미한다.”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에 선적 혹은 발송을 증명하는 추기, 부기 또는 스탬프의 방식으로 표기하여 선적 혹은 발송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별도로 부기하여 선적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전자기록에 자료내용이 추가되더라도 별도의 서명이나 인증은 필요 없다.”<sup>32)</sup>

### 3) 전자기록의 심사

전자기록의 심사는 전통적인 지면서류의 심사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31) 한주섭, 최신, 신용장론, 동성사, 1998, pp53~58

32) eUCP Version 1.0, Article e10;



있다. Internet 통신 기술의 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조화를 이루는 심사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1) 외부 시스템 참조방식의 심사

전자선하증권과 같은 은행이 심사대상 서류에 해당하는 전자기록을 직접 접수하지 못하고 다만 이와 관련된 외부참조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자기록의 심사를 지시하는 문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Web page 내에서 여러 장소로 네비게이트 하거나 다른 Web page로 뛰어 넘어 들어 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하이퍼링크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은행은 이를 직접 클릭하거나 어드레스바(address bar)에 표시하여 Enter를 클릭하면 관련 Web page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찾아 검색하여 볼 수 있다.

“전자기록에 하이퍼링크(hyperlink)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전자적 제시에 그것이 외부의 시스템을 참조하여 심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하이퍼링크 또는 외부참조시스템(referenced external system)에서 제시되는 전자 기록은 신용장 조건에의 일치성 심사를 위한 전자기록으로 간주된다.<sup>33)</sup>

그러므로 은행에 최초로 제시된 전자기록을 심사대상 서류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외부의 참조 시스템을 표기하는 하이퍼링크가 있으며 은행은 이를 클릭(click)하여 나타난 전자기록을 심사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정 외부 참조 시스템이 요구되는 전자서류에 접속되도록 하지 못하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는 것이다. 은행은 서류심사시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거절의 절차를 밟게 된다.<sup>34)</sup> 전자 기록이 외부의 시스템을 참조하여 심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을 때에 그 외부 시스템에서 심사시점에서 요구되는 전자기록을 접속 할 수 없다면 불일치(discrepancy)로 간주되어 인수거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2) 전자기록의 훼손

전통적인 지면서류의 우편배달의 경우와는 달리 Internet 통신 기술에 의한 전자서류는 그 송달과정에서 훼손(corruption)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위 글자가 깨져서 읽을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때로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전자서류 파일(file) 전체가 전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훼손되기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만일 발행은행, 확인은행, 또는 기타 지정은행에 심사를 위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은행은 제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훼손된 전자기

33) eUCP Version 1.0, Article e6, a:

34) eUCP Version 1.0, Article e6, a:

35) eUCP Version 1.0, Article e11, a:

록을 다시 제시(re-presentation)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sup>35)</sup>

#### ① 심사기간

만일 은행이 제시된 전자기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자기록이 훼손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제시인에게 다시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심사기간은 중단되며 그 후 제시인이 전자기록을 재 제시하는 때에 심사기간은 다시 시작된다.<sup>36)</sup>

#### ② 지정은행의 의무<sup>37)</sup>

만일 지정은행이 훼손된 전자기록의 재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그 지정은행은 발행은행 및 확인은행에 다음의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i) 재 제시요구통지(notice of the request for re-presentation)

ii) 심사기간 산정 중단 사실

이때에도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라며 위의 의무는 이행할 책임이 없다.

#### ③ 30역일(calendar days)의 원칙

은행이 전자기록을 재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기록이 30역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은행은 그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sup>38)</sup> 여기에서 30역일이란 기산일에서 말일에 이르기까지 국정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의 은행휴무일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하여 달력에 있는 30일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된 일수를 의미한다.

#### ④ 유효기간의 불변원칙

은행이 전자기록의 재 제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기록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종료일 및 전자기록 발행 후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즉, 서류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서류의 발행 후 제시기간 종료일은 이와 관련하여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sup>39)</sup>

### 4) 전자기록의 거절통지

은행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시되는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의 일치 여

36) eUCP Version 1.0, Article e11, a:

37) eUCP Version 1.0, Article e11, b, ii:

38) eUCP Version 1.0, Article e11, b, iii:

39) eUCP Version 1.0, Article e11, b, iv:

부확인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sup>40)</sup>

- ① 서류의 조건은 신용장의 조건에 문면상 일치하여야 한다.
- ② 문면상 일치여부의 여부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③ 제시된 서류의 조건에서 상호간 모순성이 있으면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전자신용장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가 발견되어 이를 인수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은행은 서류의 인수거절과 관련된 불일치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여 그 서류를 접수한 일자 다음일자로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거절통지를 제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sup>41)</sup> 그러나 은행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불일치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설사 중대한 불일치 사항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 (1) 제시인의 30일 이내의 응답의무

발행은행, 확인은행 혹은 지정은행이 거절통지서(notice of refusal)를 제시인에게 송부하였다면 그 거절통지를 접수한 제시인은 그 통지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기록 처분에 관한 지시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가 없을 경우 은행은 모든 지면서류는 제시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전자기록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방식으로 처분(dispose)하여야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sup>42)</sup>

#### (2) 전자기록의 심사불능 형식

전자기록이 전자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입지에서 그 형식으로 심사불능(inability to examine)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은행은 이의 심사불능의 사실을 이유로 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을 인수 거절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전자신용장에서 제시될 전자기록의 형식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제시된 형식으로의 전자기록 심사불능의 이유로 제시된 전자기록을 인수거절 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sup>43)</sup>

그러므로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은 전자신용장 발행에 있어서 그들이 심사할 수 있는

40) UCP 500 Article 13, a참조

41) UCP 500 Article 14참조

42) eUCP Version 1.0, Article e7, b:

43) eUCP Version 1.0, Article e6, c:

전자기록의 형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은 제시된 형식의 전자기록을 떠올려 판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용장에서 요구한 형식으로 전자기록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정은행의 경우에도 전자기록의 발행인으로부터 제시되는 형식이 이들의 능력으로 열수 없어서 그 접수된 전자기록을 심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지정은행의 경우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본래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 연지급확약은행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의 이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는 한, 지정은행의 입지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발행은행이 지정은행을 지급(paying)·인수(accepting)·매입(negotiation)·연지급확약(deferred payment undertaking)은행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지정은행의 아무런 확약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정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지급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sup>44)</sup> 이러한 관점에 지정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형식의 전자기록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정은행이 접수한 형식의 전자기록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의 인수 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지정은행의 본래의 입지와 상반되는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므로 지정은행은 이 조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3) 추가적 면책

지정은행은 지급·인수·매입, 연지급확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로부터 접수한 전자기록을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 등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 전자 기록의 진정성을 명백히 검토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정은행은 그가 전달한 모든 전자기록에 대하여 진정성(authenticity)을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전자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기록 송부인의 저에, 정보의 권원 및 불변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전자기록의 접수, 인증 및 확인에 있어서 은행은 상업적으로 수락할만한 자료처리절차를 통하여 그 전자기록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sup>46)</sup> 은행은 접수된 전자기록을 타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그 전자기록의

44) UCP 500 Article Article 10 c:

45) eUCP Version 1.0, Article e6, b:

46) eUCP Version 1.0, Article e12

진정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수락할 만한 자료처리절차에 의하여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전자신용장상 전자기록의 제시의 심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신용장통일규칙(UCP)은 원칙적으로 화환신용장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거래원칙인 독립성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으나 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의 서류를 전자서류 즉, 전자적 기록으로 변경하여 적용·심사해야 한다.

eUCP상의 전자적 제시에 대한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신용장의 조건에서 제시되는 전자기록의 심사기간은 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완결통지를 접수한 은행 영업일 다음 최초의 은행영업일에 기산된다.

둘째, 전자기록 및 전자적 제시에 외부 시스템을 참조하여 심사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이때에 외부 참조 시스템에서의 전자기록은 심사되어야 할 전자기록으로 간주된다.

셋째, 지정된 외부 시스템이 심사시에 요구되는 전자기록에 접속될 수 없다면 불일치가 된다.

넷째, 심사를 위하여 접수된 전자기록이 훼손되었다면 은행은 제시인에게 통보하여 전자기록을 재 제시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은행이 전자기록의 재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그 전자기록이 재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기록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섯째,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전자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또는 아무런 형식이 요구되지 않았을 경우 제시된 형식으로 전자기록을 심사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인수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여섯째, 발행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전자신용장의 조건에 의한 전자기록을 포함하는 제시에서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인수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거절 통지를 제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시에 전자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은행으로부터 거절통지를 접수한 당사자는 거절통지를 접수한 당사자는 거절통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처리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은행이 그러한 지시를 접수 하지 못하였다면 지면서류는 제시인에게 반환하되 전자기록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은행으로서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전자기록의 심사에 관한 연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다.





## 참 고 문 헌

- 김 영훈(2002) 신용장거래의 전자화시도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 강 원진(2002)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론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 1호
- 내외경제신문(2002) 무역서류 인터넷결제 한빛, (5.10)
- 박 상기·심 갑영(2002)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 장 흥훈·한 재필(2002)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 두남출판사
- 이 영수·김 형국(2002) 인터넷무역론, 두남출판사
- 오 원석(2002)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 최 석범(1999)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1호
- 최 석범(2002) 전자제시를 위한 UCP500의 부칙(eUCP)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 최 영곤(2001) 「국제무역결제론」, 형설출판사.
- ICC(2002) Export ponder e-supplement to documentary credit rules,  
[www.iccwbo.org/home/news-archives/2000/e-supplement.asp](http://www.iccwbo.org/home/news-archives/2000/e-supplement.asp)
- ICC(2002) The secretary General, Memorandum re: updating UCP 500, 24July, p.1
- James E. Byrne(2002) "Advanced eUCP session", Institute Banking law and practice, singapore
- Peter Jones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 - Bolero's Legal Platform" [www.ewbcome.com](http://www.ewbcome.com)
- Young, Margaret L. & others(1999) Internet : The Complete Reference, Millennium Ed.,  
McGraw-Hill, p.650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2001). Article 2 Definitions (a)
- eUCP Version 1.0, Article e5, C
- eUCP Version 1.0, Article e6.A ,B, C
- eUCP Version 1.0, Article e7. A, B
- eUCP Version 1.0, Article e8.
- eUCP Version 1.0, Article e9
- eUCP Version 1.0, Article e10.
- eUCP Version 1.0, Article e11, A, B
- eUCP Version 1.0, Article e12.
- UCP 500, Article

<summary>

## **A Study on the Nature of eUCP Credit and the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

Choi, jong-su\*

Choi, young-kon\*\*

With the development of an internet, the international trade can be made via internet and other trade related businesses can electronically be achieved. This new type of trade is called electronic trade. The electronic trade is expected to dominate the international trade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ICC's Banking Commission established a working group consisting of experts in the related fields to prepare the appropriate rules as a supplement to the UCP.

The result is the new 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This eUCP was approved by the ICC in end December 2001 and come into force on April 1, 2002.

The eUCP will provide the necessary rules for the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equivalents of paper documents under UCP.

The 12 articles of the eUCP c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scope of the eUCP, format, presentation, examination, notice of refusal, original and copies, date of issuance, transport,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after presentation and additional disclaimer of liability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under UC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view and analyze the major issues for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 under eUCP credit.

In accordance with analysis, if an electronic record contains a hyperlink to an external system or a presentation indicates that the electronic record may be examined by reference to an external system, the electronic record at the hyperlink or the referenced system shall be deemed to be the electronic record to be examined. The failure of the indicated system to provide access to the required electronic record at the time of examination shall constitute a discrepancy.

The forwarding of electronic records by a Nominated Bank pursuant to its nomination signifies that it has checked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electronic records.

The inability of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if any, to examine an electronic record in a format required by the eUCP Credit or, if no format is required, to examine it in the format presented is not a basis for refusal.